제849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(경찰청)	1.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제조·판매·임대업, 화약류저장소 설치 및 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소지 허가 갱신 제도 신설(신설) ○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제조·판매·임대업 허가를 받은 자는 5년마다 허가 갱신 ○ 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5년마다 허가 갱신 ○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5년마다 허가 갱신 ▶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,제6조제6조의2제16조제25조 2.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제조·판매·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받으려는 자의 정신질환 관련 결격사유 정비(강화) ○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제조업자의 결격 사유에 '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' 추가(안 5조) ○ 판매·임대업자, 화약류저장소 설치자는 제5조의 규정 준용 ▶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,제7조제25조	1.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 6.비중요 7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에「스토킹처벌법」상 스토킹범죄를 추가(강화) ㅇ 총포・도검・화약류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「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18조 제1항・제2항의 스토킹 범죄 추가 ▶총포・도검・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4.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폐기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폐기 신고토록 개정(강화) ㅇ 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을 폐기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, 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과 허가증을 제출하도록 규정 ▶총포・도검・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5.위해예방규정 및 안전교육계획 수립·승인 의무대상 확대(강화) ㅇ 위해예방규정 및 자체 안전교육계획 수립·승인 의무를 현행 '제조업자'에 '화약류 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'를 추가하여 확대 ▶총포・도검・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,제39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6.총포 제조업 등 허가 시 조건부가 및 위반 시 행정처분(강화) ㅇ 허가, 변경·갱신허가 시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과 폭발·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- 허가 조건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정지(효력정지) 처분 가능 ▶총포・도검・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,제46조제47조 7.휴업 후 영업 재개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규정(신설) ㅇ 총포 제조업 등의 휴업 후 영업 재개 신고 근거 마련 ▶총포・도검・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	
2	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1) 개정안 (소방청)	1.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1) 일부개정(강화) ㅇ 주차장의 경우 소화기구 표지를 바닥에서부터 1.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, 표지판은 축광식표지로 설치할 것을 추가 ▶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1) 제4조	1.비중요
3	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(NFSC 301) 개정안 (소방청)	1.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(NFSC 301)(강화) ㅇ 4층 이상의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의 경우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을 설치하고, 피난기구의 안내표지를 외국어 및 그림으로 병기하여 설치할 것을 추가 ▶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(NFSC 301) 제4제2항제4호 등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(신설) ○ 공모펀드 등록시 2억원 이상 규모로 할 것 등 고유재산 투자계획의 구체적사항을 규정 - 투자계획 미이행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▶금융투자업규정 제7-1의2 2.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(신설) ○ 시행령에서 규정*하는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방식 규정 * 소규모펀드 비율이 5%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공모추가형 펀드 등록을 제한하도록 규정 ▶금융투자업규정 제7-1의3	1.비중요 2.비중요
5	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제정안 (보건복지부)	1.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(신설) ○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진료과목 7개 이상 및 간호등급 3등급 이상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등을 규정 ▶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제2조	1.비중요
6	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측정값 표시 변경(강화) ○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하여, 측정값의 기본 단위를 0.1kWh 이하에서 0.01kWh 이하로 변경 ▶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5.3 a)	1.비중요